

##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(안)

|          |   |
|----------|---|
| 의안<br>번호 | / |
|----------|---|

제출년월일 : 1995. 7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□ 제안 이유

- 정무부지사의 신설과 이와 관련한 비서요원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
- 관련 정원의 증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 골자

- 본청의 정원 4명을 증원
  - 부지사 요원 1명 (1급 상당 지방별정직)
  - 비서요원 3명 (지방행정 6급 1명, 지방기능직 2명)

### □ 근거 법령

- 지방자치법제103조제1항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

##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본청 “894명”을 “898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